BarberCosmo
Board of Barbering & Cosmetology

제재 심의 위원회 청문회

Q 동의할 수 없는 벌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편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이 명시되어있고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반 사항" 이나 "선택적인 위반사항" 항목에 체크를 하고 귀하가 항소 청구를 하고 싶은 모든 위반 사항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벌금통지서에 적혀있는 마감 시한까지 신청한다면, 위원회에서는 벌금통지서에 대한 항소 청구를 받은 후, 확인 서한을 귀하께 발송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발 미용위원회의 제재 심의 위원회에서 격의없는 형식으로 열리는 항소 청문회의 일정을 잡게 됩니다.

Q 벌금통지서에 대한 항소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A 모든 항소 청구는 반드시 벌금통지서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은 통지서, 위반사항 고지서 나 벌금통지서 발부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지 않은 항소 요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벌금통지서를 받은 개인만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청문회 일정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보받나요?

A 청문회 날짜로 부터 대략 30일 전에 우편으로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통보받게 됩니다. 통지문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귀하의 주소-귀하의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번은 보통 우편으로, 다른 한번은 등기로 통지서를 두번 발송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귀하의 시설에 대한 면허증을 취소하셨다면, 새로운 주소로 바뀐 날로부터 30일 안에 위원회에 통지해 주십시오.

Q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를 대신할 수 있는 위임 대표를 보내셔야 합니다. 귀하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대리인의 청문회 참석을 허용하는 승인서에 서명을 하셔서, 그 승인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시설의 직원이라면 그 시설의 점주가 청문회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을 취소하시고 벌금 전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신청" 서는 청문회 통지서 두번째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계속

Q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나요?

A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으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합당한 이유"란 병, 자동차 사고, 근친의 사망, 이나 중병 또는 그외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합당한 이유로 간주되는 상황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비공식적인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 항소 청문회에서 귀하는 귀하의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귀하는 15분 동안 귀하의 사건을 진술하고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법률 대리인이나, 증인을 데려오거나 귀하의 사례를 입증해줄 서류 또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증거물의 예시입니다:

- 위반 사항을 교정한 사진
- 풋스파 청소일지 사본
- 감시비디오 녹화 화면을 담은 CD
- 면허증 사본 (무면허나 허가 만료로 적발되셨다면)
- 우편 발송의 증거/등기 영수증
- DCA 수표 앞 뒤 사본
- 입주 날짜와 만기 만료일이 기록된 리스 계약서
- 사망증명서
- 시간 카드/예약 기록부
- 건강보험 고지서/의사에게서 온 편지
- 어떤 위반 사항도 안보이는 미래의 조사보고서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없는 신분증을 지적한 경우)
-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실제 도구/기구; 바비사이드 스프레이 병/살균제

Q 통역관이 필요한데 그곳에 있나요?

A 사전요청을받은경우, 위원회에서는스페인어또는베트남어통역사를제공해드립니다. 필요시귀하의통역사를직접준비할수있으며, 귀하의통역사는통역사본인에게발부된소환장에대한항소청문회가같은장소에서열릴예정이라면참석할수없습니다.

Q 항소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A 청문회 날짜로부터 30일 후에 위원회의 결정이 우편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귀하께 송달될 결정문으로 귀하의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이 유지, 수정, 또는 철회되는지 안내해드리며, 벌금이 얼마인지도 알려드립니다.

Q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나요?

A 예. 귀하께서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행정법판사 앞에서 귀하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항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반드시 그 결정이 발효하기전에, 또는 청문회 날짜로 부터 59일이 지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항소하면 그 항소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실로 회부됩니다.